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6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박 정·송옥주·민병덕

안규백 · 임오경 · 강유정

어기구 · 소병훈 · 장경태

김현정 · 김병기 · 문금주

윤후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 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법률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전단 중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6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			
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u><신 설></u>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		
	<u>의가 있는 경우</u>		
<u> <신 설></u>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		
	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		
	<u>는 경우</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